

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특별 규정

제정 2021.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인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 교직원 채용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전임교원, 교직원인사규정 제3조 제3항의 직원, 계약직인사규정 제3조의 계약직의 신규 채용에 한해 적용한다.

② 교직원 채용 절차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직원임용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에 교직원 채용계획의 심의·의결을 위해 교직원임용관리인사위원회(이하 “임용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관리위원회는 교원과 직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한다.

③ 교원의 임용관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부총장 1명

2. 교육연구처장 1명

3.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1명

4.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3 제1항 교원 구성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

④ 직원의 임용관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부총장 1명

2. 행정지원처장 1명

3.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1명

4.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3 제1항 직원 구성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

⑤ 임용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임용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⑧ 임용관리위원회 위원은 제7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⑨ 임용관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원칙) ① 교직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교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공고) ① 인사담당 부서장은 채용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 공고문을 본교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 인원 및 채용자격 기준
2.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그 기한
3. 시험의 방법 및 일시·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기간은 공고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는 3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워크넷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긴급한 충원의 필요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 없이 워크넷 구

인등록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전형위원) ① 서류·면접전형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서류·면접전형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총장이 추천한 사람

②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본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본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동일 채용 내에서 다른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서류·면접전형은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를 사전에 전형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전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 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 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위원에게 면접 기준, 방법, 주의사항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합격자) ①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정인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본다.

②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 일 전까지 운영한다.

제8조(교직원임용공정관리위원회 운영) ①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교직원임용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위원회는 교원과 직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한다.

③ 교원의 공정관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총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3명

2.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3 제1항 교원 구성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

④ 직원의 공정관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총장이 추천하는 직원 3명

2.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3 제1항 직원 구성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

⑤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계획의 수립, 전형의 평가, 합격자 결정 등 채용 절차 전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채용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매년 신규 채용된 교직원 중 대학 교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으로 한다.

⑤ 채용 절차에 참여하는 전형위원 등은 채용 과정마다 기밀유지, 윤리준수, 비리 행위 시 책임 등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상급자 등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② 교직원은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대학 총장 · 학교법인 이사장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복성 인사 등 어떠

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채용비위 부정합격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부정 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해야 하며, 채용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2. 채용비위 관련 교직원 ·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②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1과 같이 진행한다.

제13조(특례조치) ①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직원 채용이 긴급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때에는 계약직인사규정 제3조의 계약직에 한해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채용비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 ※ (예시)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 ※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피해자 구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 · 확인될 경우 채 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 · 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형위원 서약서

본인은 상지대학교 교원 및 직원 채용을 위한 ○○전형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전형 위원이라는 사실을 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응시자의 개인정보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회피한다.
4.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인재채용에 최선을 다한다.
5.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전형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상지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형위원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청렴한 사회 조성 및 교직원 인사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상지대학교 채용 중 ○
○전형 심사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 향응수수, 권한을
이용한 알선 · 청탁 등 상지대학교의 청렴 · 윤리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형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상지대학교 감사담당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상지대학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에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